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54호 2018. 10. 8.(월)

조 례

-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규 칙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 ----- 22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75

공 고

-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7
- 목포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 82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84
-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90
-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95
-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04
-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20
-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28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3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2
-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50
-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9

기 타

- 시정알림판 ----- 164

제342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9. 18.) 의결된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89호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946호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제정조례 부칙 제2조의 본문 중 “2018.12.31.일까지”를 “2020.12.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조례 제2946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18.12.31</u> <u>일까지</u> 효력을 갖는다.	조례 제2946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20.12.31.</u> <u>일까지</u> 효력을 갖는다.

제342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9. 18.) 의결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90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목포시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 다음에 “제2장 근무시간”을 삽입한다.

제2장에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1회 사용시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일”을 “5일 (분할 불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10일 (2회 분할 가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일”을 “15일 (3회 분할 가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4장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목포시 지방공무원</u>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u>지방공무원법</u> 」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공무원 ----- -----.
제12조(복장 및 복제 등)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 <u>공무원증 규칙</u> 」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및 복제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u>국가공무원 복무규칙</u> 」(총리령)-----.
<u>〈신 설〉</u>	<u>제2장 근무시간</u>
<u>〈신 설〉</u>	제13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u>〈신 설〉</u>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신 설〉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공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2조 (공가) -----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10. (생략)

제23조 (특별휴가) ① ~ ⑫ (생략)

⑬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며, 본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20년 이상 30미만 : 10일

3. 30년 이상 : 10일

⑭ ~ ⑰ (생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6.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 (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13) -----

----- . -----

----- . 다음 각 호
의 휴가일수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1회 사용시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1. ----- 5일
(분할 불가)

2. ----- 10일
(2회 분할 가능)

3. ----- 15일
(3회 분할 가능)

⑭ ~ ⑰ (현행과 같음)

제27조 (검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42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9. 18.) 의결된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91호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중 “경관심의 대상”을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길이 1,000미터 이상부터 5,000미터 미만의 도로 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을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조명공사(경관조명 및 가로등)”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도로 · 하천시설 사업
4.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광장 · 교량 · 육교 등 토목공사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업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u>경관심의 대상</u>)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 1,000미터 이상부터 5,000미터 미만 <u>의 도로 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u>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면적이 3,000제곱미터 <u>이상인 사업</u> <신 설> <신 설> <신 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u>경관심의 대상 및</u> <u>규모</u>) 법 제 26조 및 시행령 제18조----- ----- -----. 1.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공원조성 및 조경공사 2.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조명공사(경관조명 및 <u>가로등</u>) 3.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도로 · 하천시설 사업 4.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광장 · 교량 · 육교 <u>등 토목공사</u>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관한 <u>사업으로</u>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342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9. 18.) 의결된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92호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각 필지가격의 산출평균가격”을 “각각 달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제6조에 “5,000원”을 “10,000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주출입구 접근로”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로 하고,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를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6항.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호 중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점용료의 산정에 대 한 토지가격의 기준은 인접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 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 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 우에는 <u>각 필지가격의 산출평균 가격으로 한다.</u>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u>----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 로 한다.</u>
제5조 (점용료의 조정) ①시장은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 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 다 <u>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 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 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 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u> ② (생 략)	제5조 (점용료의 조정) ①----- ----- ----- ----- ----- ----- <u>-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소액 부정수)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설>

<신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제6조 (소액 부정수) -----

-- 10,000원 -----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3. -----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 (점용료의 감면) ⑥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비고

1. -----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별표 2] (생략)

-----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삭 제>

제342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9. 18.) 의결된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93호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신 설>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삭 제>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 ----- ----- ----- -----

제342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2018. 9. 18.) 의결된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194호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대인원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함.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4.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월별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52호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충민원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 처리결과(의견)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통보)서(별지 제7호서식)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고충민원결과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사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연장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기간 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5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권리보호 요청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8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회보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한다.

-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제22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에 대한 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에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목 포 시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 약)				
00과 의 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목 포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 의결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	--------	--------	--------	--------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위와 같 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부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목 포 시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목 포 시**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 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목 포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 제21조제4항(제5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 사 반			조 사 유 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1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 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3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4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 사유				
	분납기한 및 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2회			
		3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J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5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통지내역	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사유			

끝.

목 포 시**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별지 제36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 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접수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 년 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 의견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할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승인 여부)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처리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 접수 통보
[] 체납처분유예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신청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붙임 : 신청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체납처분유예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여부 의견				
승인(기각)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과장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결정 통보
[] 체납처분유예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에 대한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일	승인여부		
유예 승인(기각)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이 결정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과세년월	세목	세액
	계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목 포 시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 결과 통보

「목포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된 세목과 세액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목포시 고시 제2018-14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82	삼학로158번길 15-4	2018.10.08	삼학로 기초번호 활용
83	산정로65번길16	2018.10.08	산정로 기초번호 활용
84	이로로9번길 16	2018.10.08	이로로 기초번호 활용
85	이로로9번길 16-1	2018.10.08	이로로 기초번호 활용
86	산정로47번길 24	2018.10.08	산정로 기초번호 활용
87	선곡로32	2018.10.08	고유지명을 사용함

목포시 공고 제2018-1230호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규정
-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금액은 현행과 동일하며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함
-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18. 10. 8. ~ 2018. 10. 29. (21일 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9일까지 목포시장(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처 : 58714, 전남 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97),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270-8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동일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236호

목포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목포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지 역 명	강우지속기간			비 고
	1시간	2시간	3시간	
목 포 시	65mm	95mm	110mm	주 의

4.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 부터

목포시 공고 제2018-1241호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1995. 2월부터 사용중인 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이 2018. 9월 현재 90.7% 로써 향후 5년 사용한계에 도달하게 되므로
-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 사업장폐기물의 목포시 위생매립장 반입을 금지하여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업장폐기물 매립처리’ 조항 삭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매립장 반입 처리(안 제8조의2 제1항)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안 제8조의2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사항 없음

7. 규제심사 대상검토 : 해당사항 없음**8. 예산수반사항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9. 입법예고 : 2018. 10. 8. ~ 2018. 10. 29.(21일 간)****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11.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9일까지 목포시장(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3),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 061-270-8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3171호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8조의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u>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제외)을 목포시 관할 구역 내에서 매립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중화, 압축, 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 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제8조의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u>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
폐기물과 성질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3·12·29, 개정
2008·10·20>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242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투자기업 지원강화와 기업유치 기구의 구성을 통해 산단분양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포시 기업유치단 구성(안 제6조)
 - 산단분양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포시 기업유치단”을 구성
- 조례명 및 문구 변경 사항 반영(안 제8조)
 -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 「목포시세감면조례」→「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로 조례명 변경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안 제28조제2항)
 -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산단분양 활성화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 지원 근거 마련

3.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관계법령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지방세법」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5. 입법예고 : 2018. 10. 08 ~ 10. 29.(21일간)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성장동력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성장동력실)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8),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성장동력실(☎ 061-270-8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조문의 제목 “투자유치자문관”을 “투자유치자문관 등”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한다.

③ 시장은 산단분양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기업유치단(이하 “기업유치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기업유치단은 시의원,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기업인, 기타 전문가로 구성하며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목포시세감면조례」”를 “재산세는 「목포시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을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투자유치자문관)①·②(생략) 〈신설〉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등)①·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산단분양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기업유치단(이하 “기업유치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기업유치단은 시의원,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기업인, 기타 전문가로 구성하며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목포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지방세의 감면) ----- ----- 재산세는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시장은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⑥ (생략)	③~⑥ (현행과 같음)

의 건 제 출 서

조 례 명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공고 제2018-1243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산단분양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투자유치 성과급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 조례 제명 변경 사항 및 일부 조문 정비(안 제2조17호, 제29조제2항)
 - “신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 일부 조문 정비
 -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개정
-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준완화(안 제28조제1항제2호)
 - 500억원, 고용규모 300명 → 300억원, 고용규모 200명
-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안 제31조제4항)
 - 투자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원의 취소 및 반환”기간을 5년으로 개정
-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 상향(제32조 별표 4)

3.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관계법령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5. 입법예고 : 2018. 10. 08 ~ 10. 29.(21일간)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성장동력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성장동력실)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48),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성장동력실(☎ 061-270-8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7호 중 “면적을 증가하여”를 “용도로 변경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2호 중 “50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고, “300명”을 “200명”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 16. (생략) 17.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u>면적을 증가하여</u>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 20.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6. (현행과 같음) 17. ----- ----- <u>용도로</u> ----- <u>변경하여</u> ----- ----. 18. ~ 20. (현행과 같음)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생략) 1. (생략) 2.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의 투자 금액이 <u>5백억원</u>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u>300명</u> 이상인 경우,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u>3백억원</u> ----- ----- <u>200명</u>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금 지원시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시기는 관계 법률이나 「 <u>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u> 」에 따른다.	제29조(보조금 지원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u> 」----- ----.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③ (생략) ④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은 <u>10년</u> 으로 한다.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5년</u> -----.

[현 행]

[별표 4] <개정 2012.10.8>

< 앞면 >

성과급 지급 기준(안 제32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비고
지급 대상	•민간인 및 공무원 •기관, 단체			
지 급 금 액	유치금액	지급비율	지급액	
	미화 10,000,000달러미만 (120억원 미만)	10,000분의 10	미화 10,000달러 미만 (12,000천원 미만)	
	미화 10,000,000 달러 ~ 미화 50,000,000달러 미만 (600억원 미만)	10,000분의 8	미화 40,000달러 미만 (48,000천원 미만)	
	미화 50,000,000달러~ 미화 100,000,000달러 미만 (1,200억원 미만)	10,000분의 6	미화 60,000달러미만 (72,000천원)	
	미화 100,000,000달러이상 (1,200억원 이상)	10,000분의 4	미화 166,000이하 (200,000천원 이하)	
차 등 적 용 기 준	적용율	적 용 내 용		
	100퍼센트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 설립 등 투자 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퍼센트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 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 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		
	30퍼센트	•투자가 발굴, 정보 입수 후 다른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기타	•유치 금액 : 당해연도 투자금액(다만 년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뒷면 〉

기업 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기준(안 제32조제1항 관련)

포상종류	공 적 내 용	비 고
특 별 승 진	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2개소 이상) ②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1억불 이상) ③ 민자사업유치(1,000억원 이상, 2개소 이상) ④ 대기업 유치(1개소 이상) ⑤ 중소기업 유치(10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 ①~⑤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전보우대인사	① 민자사업유치(500억원 이상, 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2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 ①~②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표창 및 성과상여금 우선지급	① 민자사업유치(200억원 이상, 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1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 ①~②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개 정 안]

〈 앞면 〉

성과급 지급 기준(안 제32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지급 대상	•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지 급 금 액	유치금액	지급비율	지급액	
	미화 10,000,000달러 미만 (120억원 미만)	10,000분의 30	미화 30,000달러 미만 (36,000천원 미만)	
	미화 10,000,000 달러~ 미화 50,000,000달러 미만 (600억원 미만)	10,000분의 24	미화 120,000달러 미만 (144,000천원 미만)	
	미화 50,000,000달러~ 미화 100,000,000달러 미만 (1,200억원 미만)	10,000분의 18	미화 180,000달러 미만 (216,000천원 미만)	
	미화 100,000,000달러 이상 (1,200억원 이상)	10,000분의 12	미화 498,000달러 미만 (600,000천원 미만)	
차 등 적 용 기 준	적용율	적 용 내 용		
	10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 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 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0%	•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		
	50%	• 투자가 발굴, 정보 입수 후 다른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30%	• 정보제공		
기타	• 유치 금액 : 당해연도 투자금액(다만 년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뒷면 〉

기업 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기준(안 제32조제1항 관련)

포상종류	공 적 내 용	비 고
특 별 승 진	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2개소 이상) ②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1억불 이상) ③ 민자사업유치(1,000억원 이상, 2개소 이상) ④ 대기업 유치(1개소 이상) ⑤ 중소기업 유치(10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⑤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전보우대인사	① 민자사업유치(500억원 이상, 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2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②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표창 및 성과상여금 우선지급	① 민자사업유치(200억원 이상, 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1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②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의 건 제 출 서

조 례 명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공고 제2018-1248호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존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추가 규정(현행 13개 조문 ⇒ 20개 조문으로 확대)
- 제1장 총칙
 - 목적 및 정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1조~제3조)
- 제2장 학생 치과주치의
 -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안 제4조~제7조)
- 제3장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8조~제10조)
- 제4장 지역협의체
 - 지역협의체구성운영 및 기능(안 제11조~제15조)
- 제5장 보칙
 - 예산지원 및 관리(안 제17조~제2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 「의료법」 제27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특이사항 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의견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18. 10. 8. ~ 2018. 10. 29.(21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9일까지 목포시장(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714, 전남 목포시 원산로 45번길 5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586),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270-8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 보건 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치료 등을 등록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초등학생에게 예방진료와 구강치료 등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4.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로 초등학교 까지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밖에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병,의원의 관리

제2장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제4조(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대상)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학생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 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불소도포,치아홈메우기,치석제거등),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 진료내역서(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대상)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승인한 저소득층 아동 중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

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사업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질환치료(치아우식증, 발치 등)이며 구강질환치료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실시한다.

제10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시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강검진 진료내역서(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지역협의체

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과 및 의료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보건소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지역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3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참여의료기관지정,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역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사업비)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관리 등)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등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인력 현황

1. 학생 치과주치의 기관명 : (직인)
2. 학생 치과주치의 인력현황

가. 현 황(비상근 인력은 제외)

구 분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전체 인력			
학생 치과주치의 담당인력			

※ 학생 치과주치의 담당 인력 : 전체 인력 중 학생치과주치의 전담 인력 수를 기재하고, 특히 담당 치과의사의 수는 학생치과주치의 기관의 가능 인원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사업을 전담하는 치과의사 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나. 학생 치과주치의 담당 인력 명단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해당 기관 고용일 (건강보험 취득일)
			종 별	번 호	

※ “구분”란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하되 위 가. 현황표의 “학생치과주치의 담당 인력”란에 표기한 구강건강관리 담당인력 수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기재합니다.

※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을 명시합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비용 청구서

청 구 기 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전화번호)				
지 급 계 좌				
은 행 명				
지급계좌번호				
예 금 주				
청 구 내 역				
치료 대상자				청구금액(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합 계				

우리 기관에서 ~ 까지 실시한 학생 치과주치의 구강진료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학생 치과주치의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학 교 명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_____			구강 보건 교육	☐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_____			예방 진료	☐ 자가 불소이용법	
				☐ 불소도포	
3. 치주질환 유, 무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치료일자	부위	치료내용			담당자
	+				
	+				
	+				
	+				
	+				
	+				
	+				
	+				
	+				

(뒷면)

구강검사결과(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구강 ☐ 기본 구강건강지식 보건 ☐ 개인 구강위생관리 교육 ☐ 자가 불소이용법	예방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진료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3. 치주질환 유, 무			
치료일자	부위	치료내용	담당자
	+		
	+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인력 현황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기관명 : (직인)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인력현황

가. 현 황(비상근 인력은 제외)

구 분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전 체 인력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담당인력			

※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담당 인력 : 전체 인력 중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전담 인력 수를 기재하고, 특히 담당 치과의사의 수는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기관의 가능 인원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사업을 전담 하는 치과의사 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담당 인력 명단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해당 기관 고용일 (건강보험 취득일)
			종 별	번 호	

※ “구분”란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하되 위 가. 현황표의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담당 인력”란에 표기한 구강건강관리 담당인력 수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기재합니다.

※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을 명시합니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 청구서

청 구 기 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전화번호)				
지 급 계 좌				
은 행 명				
지급계좌번호				
예 금 주				
청 구 내 역				
치료 대상자				청구금액(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합 계				

우리 기관에서 ~ 까지 실시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학 교 명					
구강검사결과(1차: . .)			구강진료 내역(1차: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_____			구강 보건 교육	☐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_____			예방 진료		
3. 치주질환 유, 무				☐ 충전(아말감, 레진, GI) ☐ 치수/치근단 치료 ☐ 발치 ☐ 기타	
치료일자	부위	치료내용			담당자
	+				
	+				
	+				
	+				
	+				
	+				
	+				
	+				
	+				

(뒷면)

구강검사결과(2차: . .)		구강진료 내역(2차: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구강보건교육 ☐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예방진료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3. 치주질환 유, 무			
		치료 ☐ 충전(아말감, 레진, GI) ☐ 치수/치근단 치료 ☐ 발치 ☐ 기타	
치료일자	부위	치료내용	담당자
	+		
	+		
	+		
	+		
	+		
	+		
	+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250호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가 2018. 12월 준공됨에 따라 본조례에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신규건립에 따른 명칭 및 위치 반영
 - － 제2조(명칭 및 위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영산로 66(무안동)
 - 2.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옥암동 1021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조표 : 별첨

5. 관련부서 의견

- 규제대상(규제개혁담당)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6.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9. 입법예고 : 2018. 10. 8 ~ 10. 29(21일간)

10. 사전협의 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9일까지 목포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68),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061-270-8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중 “청소년문화센터의 명칭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영산로66(무안동)에 둔다.”를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영산로 66(무안동)
2.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옥암동 102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문화센터의 명칭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영산로 66(무안동)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영산로 66(무안동) 2.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 목포시 옥암동 1021

[관련 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251호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공용건축물 및 건축신고와 관련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지정하는 한편,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범위를 목포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한정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제20조)
 - 1)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건축물 중 허가 대상은 감리자, 소규모 신축신고 건축물은 설계건축사가 작성한 조서로 갈음하도록 함.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명확화(제22조 제1항)
 - 1) 공용건축물 및 건축신고와 관련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함.
 -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의 지정 범위를 목포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로 한정하는 제한적 규정을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확대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5.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6. 관련부서 의견

- 규제대상(규제개혁담당) : 의견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8. ~ 2018. 10. 29.(21일 간)

9. 사전협의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작업단-404(2018.6.15.), 705(2018.9.7.)호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합동평가지표(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규제개선 과제
 통보 및 정비 촉구
-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6765(2018.6.19.), 1218(2018.9.10.)호
- 목포시 기획예산과-5578(2018.6.22.), 8370(2018.9.10.)호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건축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530-701,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건축행정과)]

붙임 1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다만 허가대상은 감리자, 건축신고 대상은 설계자가 작성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한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기타 소규모 건축신고 건축물”을 신설한다.

제22조제1항 중 “건축허가·사용승인”을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건축물(법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포함)”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과 같은 항 제7호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신설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목포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직접선정 하되 해당”을 삭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목포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지정”을 “지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단서 신설></u> 1. ~ 2. (생략) 3. (신설)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물의 <u>건축허가·사용승인</u>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u>건축물</u> 2. ~ 5. (생략)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다만, 허가대상은 감리자, 건축신고대상은 설계자가 작성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한다.</u> 1. ~ 2. (현행과 같음) 3. <u>기타 소규모 건축신고 건축물</u>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물의 <u>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u>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u>건축물(법 제29조에 따른 공용 건축물 포함)</u> 2. ~ 5. (현행과 같음)

6. ~ 7. (신 설)

6. 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중 신축신고대상
건축물

7.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생 략)

1. 시장이 목포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직접 선정하
되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
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업무대
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 목포지역건축사협회와 협
의하여 지정 및 선정 절차를
따로 둘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시장이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
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업무대
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 및 선정 절차를 따로 둘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목포시 공고 제2018-1252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목포시 주차장 설 및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유료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시간 연장 및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으로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요금 감면 규정 상향 조정(제3조 제1항, 3항)
 -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무료에서 1시간 무료 확대
 - 65세 경로우대 감면 조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 9조(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2항
제14조(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2항
제15조(관리방법)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의견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18. 10. 8. ~ 2018. 10. 29.(21일 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9일까지 목포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91),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061-270-3683, FAX 270-3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은 1구획당 60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 운영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2.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 및 고객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5. 그 외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며,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으로 갈음한다.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여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소 60분까지	60분 초과 후 3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소형	무료	500	5,000	50,000	40,000	85,000
대형	600	600	8,000	65,000	52,000	115,000

<비고>

- 주차장 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간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보며,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월 별	주간시간	비고
· 노상주차장	4월 ~ 10월	09:00~19:00	
	11월 ~ 3월	09:00~18:00	
· 노외주차장	4월 ~ 10월	09:00~20:00	
	11월 ~ 3월	09:00~19:30	

-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 제3조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모범납세자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시장은 공영 주차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전용주차장을 제외한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서는 1구획당 30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 ----- ----- .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은 1구획당 60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 등 운영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에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 「전통시장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 및 고객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그 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 유증 환자 2.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 및 고객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

의 100분의 60을 감면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4조(주차거부 금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5. 그 외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며,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으로 갈음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조(주차거부 금지) -----

-----.

2. 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여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구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초과후 3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최초 60분까지	60분초과후 3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소형	500	500	5,000	50,000	40,000	85,000	소형	무료	500	5,000	50,000	40,000	85,000
대형	600	600	8,000	65,000	52,000	115,000	대형	600	600	8,000	65,000	52,000	115,000
<비고> 1. ~ 3. (생략) 4. (생략) (가)~(아) (생략) <신설>							<비고>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아) (현행과 같음) (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 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또는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목포시 공고 제2018-1253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
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보수체계를 상향 조정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동 시행규칙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일부, [별표 1] 수정
 - 인력구성에 팀장 직위 추가
- 동 시행규칙 제4(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관련 [별표2] 수정
 -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임무<사무분장> 팀장 추가
- 동 시행규칙 제6조(보수)관련 별표[3] 내용 수정
 - 월기본급 상향조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6조

5. 입법예고 : 2018. 10. 08. ~ 2018. 10. 29.(21일 간)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도시재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32, 목포시청(도시재생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253),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재생과(☎ 061-270-36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제 출 서

규 칙 명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한다.

별표1 ~ 별표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u>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u>을 둘 수 있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u>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u>을 둘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구성) 관련 [별표1]

[별표 1]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제2조관련)

직급(책)	채용 자격	비고
센터 장	(내용 생략)	
사무국장	(내용 생략)	
사무원	(내용 생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 분야

(내용 생략)

☐ 관련 학과

(내용 생략)

개정안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구성) 관련 [별표1]

[별표 1]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제2조관련)

직급(책)	채용 자격	비고
센터 장	(현행과 같음)	
사무국장	(현행과 같음)	
팀장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원	(현행과 같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 분야

(현행과 같음)

☐ 관련 학과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관련 [별표2] [별표 2] <u>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임무<사무분장>(제4조관련)</u> <table> <tr> <th>직 책</th><th>임 무</th></tr> <tr> <td>센터장</td><td>(내용 생략)</td></tr> <tr> <td>사무국장</td><td>(내용 생략)</td></tr> <tr> <td>사 무 원</td><td>(내용 생략)</td></tr> </table>	직 책	임 무	센터장	(내용 생략)	사무국장	(내용 생략)	사 무 원	(내용 생략)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관련 [별표2] [별표 2] <u>센터장 및 센터 직원 임무<사무분장>(제4조관련)</u> <table> <tr> <th>직 책</th><th>임 무</th></tr> <tr> <td>센터장</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사무국장</td><td>(현행과 같음)</td></tr> <tr> <td>팀 장</td><td> • <u>현장지원센터 또는 선도지역내 사업계획 수립</u> • <u>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공통)</u> • <u>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공통)</u> • <u>현장지원센터 관련 업무 전반</u> </td></tr> <tr> <td>사 무 원</td><td>(현행과 같음)</td></tr> </table>	직 책	임 무	센터장	(현행과 같음)	사무국장	(현행과 같음)	팀 장	• <u>현장지원센터 또는 선도지역내 사업계획 수립</u> • <u>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공통)</u> • <u>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공통)</u> • <u>현장지원센터 관련 업무 전반</u>	사 무 원	(현행과 같음)
직 책	임 무																		
센터장	(내용 생략)																		
사무국장	(내용 생략)																		
사 무 원	(내용 생략)																		
직 책	임 무																		
센터장	(현행과 같음)																		
사무국장	(현행과 같음)																		
팀 장	• <u>현장지원센터 또는 선도지역내 사업계획 수립</u> • <u>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공통)</u> • <u>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공통)</u> • <u>현장지원센터 관련 업무 전반</u>																		
사 무 원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수) 관련 [별표3]		제6조(보수) 관련 [별표3]		
[별표 3] <개정 2016. 11. 7, 2017. 4. 24>		[별표 3] <개정 2016. 11. 7, 2017. 4. 24, 2018. . .>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제6조관련)		센터장 및 센터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제6조관련)		
직 지급항 목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월 기본급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7급 5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8급 5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9급 5호봉 봉급 상당액
직 지급항 목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월 기본급	지방공무원 5급 20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6급 13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7급 10호봉 봉급 상당액	지방공무원 8급 7호봉 봉급 상당액

목포시 공고 제2018-1256호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명 및 용어를 맞게 변경하고
- 특정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개정사항 반영 및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변경

-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나. 법률명 및 용어변경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 “분석평가” ⇒ “평가”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정성별영향평가”

다.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및 평가실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7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1조)
- 위원회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안 제13조~제17조)

마.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안 제18조)

바.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안 제2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특이사항 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의견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18. 10. 08. ~ 2018. 10. 29.(21일 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9일까지 목포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68),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061-270-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세우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평가의 실시

제5조(평가 대상)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 분석
3.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제출 전

제8조(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2. 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목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목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목포 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또는 목포시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진술 등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실·국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평가 교육) ① 시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기관) 시장은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목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같은 조 본문 중 “분석·평가하며”를 “평가하며”로 한다.

제28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목포시 공고 제2018-1259호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2017. 10. 17. 일자로 공포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안부의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개정되었으므로 공개조항 신설 (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의견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18. 10. 08. ~ 2018. 10. 29.(21일 간)

9.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9일까지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8), 직접방문 등

10.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061-270-3426, FAX 270-3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용역결과 관리) ① 용역 업무(학술용역) 관련 주관 실과소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용역 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역 주관부서장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1조(용역결과 관리) ① 용역 업무(학술용역) 관련 주관 실과 소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예산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업무 담당과장은 용역 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 <u>② 용역 주관부서장은 정책연구 용역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u>제11조 · 제12조 (생략)</u>	<u>제12조 · 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u>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 또는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시 정 알 림 판

가을 나들이 위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 집중신고기간 : 2018. 10. 1.(월)~11. 30.(금)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
※ 안전신문고 앱은 Play스토어와 App Store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축제장·야영장·유원지 위험요인, 불법 취사 및 소각 행위, 낙석 위험 도로 및 등산로 파손 교통시설 파손 및 잘못된 설치, 기타 생활안전 위험요인 전반

안전총괄과 ☎ 061-270-3264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지역별고용조사란? 우리나라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
- 조사기간 : 2018. 10. 21.(일)~11. 7.(수)
- 조사대상 : 전국 20만 1천 표본가구내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10. 22.~10. 26.) 및 조사원 방문
- 인터넷조사 : www.narastat.kr/eregion
※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해당 가구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콜센터 ☎ 061-2012-9114

2018년 목포장학재단 저소득 장학생(중·고) 선발

- 신청기간 : 2018. 10. 17.(수)~10. 31.(수) [2주간]
- 신청대상
 - ① 공고일 현재 본인 및 친권자가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목포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②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 이내
 - ③ 재산세 20만원 이하(본세 기준, 자동차세 제외)
- 제외대상
 - ① 2018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 장학금 수혜자
 - ② 국가 등으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 되는 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 ③ 공무원 자녀
- 선발인원 : 50명(중학생 22, 고등학생 28)
- 지급금액(1인당) :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접수장소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목포시청 교육체육과(수문로 32, 트윈스타)

교육체육과 ☎ 061-270-3561

시 정 알 림 판

2018년 하반기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2018. 10. 1.(월)~10. 31.(수) [1개월간]
 - 참여대상 : 목포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전 국민)
 - 공모주제
 - ① 평화경제의 중심 목포와 전남 서남권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
 - ② 목포발전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SOC사업
 - ③ 목포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사업
 - 참여방법
 - 인터넷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epople.go.kr) ⇨ 국민행복제안 ⇨ 공모제안(담당기관 '목포시' 선택)
 - 우 편 : (우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 팩 스 : 061-270-3579
 -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 분까지, 팩스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시상내역 : 금상(300만원), 은상(200만원), 동상(100만원), 장려상(50만원)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공고문의 양식을 기준으로 하며 변형 가능)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mokpo.go.kr) ⇨ 열린행정 ⇨ 시정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 참조
- 기획예산과 ☎ 061-270-3211**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도슨트 프로그램 안내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작품 및 작가 설명 등 관람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018. 8. 31.(금)~10. 31.(수) ※ 매주 월요일 휴무
- 설명시간
 - 정 기 : 10:00, 11:00, 14:00, 15:00, 16:00 (총5회)
 - 수 시 : 단체관람객 20명 이상 방문 시
- 참여대상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방문 관람객
- 소요시간 : 약30~60분
- 장 소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장(7개소)
 - ※ 정기설명은 별도의 예약없이 전시관 입구 앞에 모이시면 선착순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설명시간 및 소요시간 등은 전시장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 전시기획팀 ☎ 061-280-5893

